

제1문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40점)

[1] 공청회의 의의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전자공청회라 한다.

[2] 공청회 대상

청문은 처분에 국한하여 인정되는 의견청취제도인데, 공청회는 처분뿐만 아니라 입법안 및 정책·제도·계획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3] 의견진술의 주체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경우 당사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공청회의 경우는 당사자등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일반인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4]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등

-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①**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②**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2) 행정청은 입법안 및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계획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3)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5] 공청회의 진행 등

1. 공청회 개최사실의 통지·공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①**제목 **②**일시 및 장소 **③**주요 내용 **④**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제1회 행정사 행정절차론 문제의 예시답안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답안은 글자 그대로 예시답안일 뿐입니다.

여기의 답안보다 더욱 훌륭한 답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기의 답안보다 부족하게 서술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로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절차론 담당 김욱

알려야 한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1)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공청회의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 (3)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청회의 진행

- (1)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7] 처분과 공청회의 생략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8] 공청회 불실시와 처분

개별법령상 요구되는 공청회 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취소사유 있는 처분이 된다.

제2문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1] 행정조사의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5)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6)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조사의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문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1] 행정예고의 개념

행정예고란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이 정하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행정청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의 관계

- (1) 행정상 입법예고는 입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정책이나 제도의 대부분은 법령으로 제정된다.
- (2) 따라서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예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3) 이점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도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의 차이점

- (1)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예고기간이다.
- (2)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단, 조례는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문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1] 행정규제의 의의**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 법정주의

- (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2)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3)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3]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2)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